



Vol. 11

2022.11.17.

& Customs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217

F. 02-545-539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원태희전임 thwon@hjcustoms.co.kr

CONTENTS

I. 법령 개정사항

II. 입안 예고

III. 조세심판사례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제조 · 수입에 관한 등록 ·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4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제공 요청 자료의 내용 등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고분자화합물 등 등록신청 간소화 대상 화학물질 추가	고분자화합물의 위해성에 관한 완화된 국제 기준을 반영하고, 중복자료의 제출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간 1천톤 미만으로 제조 · 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질승인이 신청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신청 할 수 있도록 함.
허가물질의 지정 절차 개선	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선정된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유해성, 용도 및 노출정보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 검토를 하도록 하며, 화학물질의 명칭, 허가물질을 지정하는 이유 등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화학물질의 제조 · 수입 · 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제공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제조 · 수입에 관한 등록 ·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청장에게 화학물질의 품명 · 규격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I . 법령 개정사항

구분	내용
업무 위탁기관의 변경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던 기존 척추동물시험 자료의 확보 및 활용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에 위탁함.

(3) 시행일

‘22.10.15

I. 법령 개정사항**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1)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분자화합물 등 특정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와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하고, 유해성 심사 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허가대상 후보물질 선정기준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등록 신청 시 생략 가능 제출 자료 추가	연간 1천톤 미만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의 위해성 자료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 시 제출한 자료와 같은 서류를 생략 대상 제출자료에 추가함.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 생략	연간 제조·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을 할 때 해당 화학물질의 물용해도가 1mg/l 미만이거나 화학물질을 중간체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려는 경우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유해성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규정 신설	유해성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통지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동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기준 신설	허가물질 지정 시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이러한 허가대상 후보물질 선정과정에서의 유해성, 용도 및 노출정보 등 관련 검토를 위한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기준을 마련함.

(3) 시행일

`22.10.15

I. 법령 개정사항**3.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1) 개정 이유**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HS code 제3701.30.2000호에 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자 함. ①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2회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일 것 ② 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mm)를 초과하고 감광면이 2개층일 것

(3) 시행일

‘22.10.25

I. 법령 개정사항**4.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1) 개정 이유**

관세법 제 18 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1 조의 2 과세환율 개정사항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ACVA) 결정 후 변경 신청 시 잠정가격 신고 허용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는 동시에, 법정 외 불필요한 관세평가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과세환율 개편 반영	외국환매도율을 기준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선정 규정을 삭제 함.
ACVA 변경 신청 시 잠정가격신고 허용	ACVA 결정 이후에 ACVA 변경 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아직 받지 못한 경우, 잠정가격신고를 허용함.
관세평가자문위원회 폐지	심사행정 자체 위원회·협의회 개편 계획 ('21.12.30)에 따라 법정 외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함.

(3) 시행일

‘22.10.31

II. 입안 예고**1.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안계획****(1) 개정 이유**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피ング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p>HS code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자 함.</p> <p>① 외경 3.80밀리미터(mm) 이상 28.58밀리미터 (mm) 이하인 것</p> <p>② 두께 0.20밀리미터(mm) 이상 2.00밀리미터 (mm) 이하인 것으로 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함</p> <p>③ 길이 50미터(m) 이상인 것</p>

II. 입안 예고**2. 「대외무역법 시행령」 입안계획****(1) 개정 이유**

대외무역법('22.6.10)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상과 관련된 사항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과징금 납기 연장 요건 완화	현행 1억원 이상의 과징금납부 대상자에게만 허용하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에 대해,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자나, 1천만원 이상의 납부대상자에게도 허용하고자 함.
과징금 부과금액 경감요건 완화	현행 경감요건에 사업규모(중소기업 여부)도 고려하여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 확대	국내생산물품에 대해 국내 거래를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요청이 많아짐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해서만 발급되던 원산지증명서를 국내생산물품에 대해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기한

'22.11.22

II. 입안 예고

3.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입안계획

(1) 개정 이유

타법을 통해 비공개 승인받은 영업비밀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관리번호인 등록·신고번호(타법상 비공개 승인대상 아님)를 통해 타인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 타법에 따라 비공개 승인받은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고번호도 비공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화학물질 등록·신고번호 비공개 승인 대상 포함	타법에 따라 비공개 승인받은 정보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신고번호도 비공개 승인된 것으로 보아 보호하고자 함. 이 경우, 양수자가 해당 화학물질이 적법하게 등록 및 신고된 물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여부는 표기하도록 함.

II. 입안 예고

4.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 실시요령」 입안계획

(1) 개정 이유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고시 검토 후 수정 사항을 반영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의 개정으로 수입검사 시 비의도적 혼입률 확인을 위한 LMO 정량검사를 농식품부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동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정량검사 의뢰기관 변경	통합고시(제3-13조 2항) 개정에 따라 정량검사 의뢰기관을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정량검사 의뢰 서식(별지2호)의 변경 및 결과 통지서 서식(별지8호)을 신설하고자 함.
관련 문구 및 용어 수정 등	규정 해석의 명확화를 위해 관련 문구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 및 변경하고자 함. ① 마대, 캔 등 포장단위로 수입하는 경우 LMO 표시사항 확인 방법 추가 ②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용 및 농업 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용어 변경 ③ 반송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선하 증권 등으로 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반송 확인 방법 추가
기타 변경 사항 등	그 밖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순서에 따라 조문 순서 변경(제8조→제9조) ② 재검토기한 신설(제19조) ③ 토마토 학명 이명에서 정명으로 수정(별표 1) ④ 시료채취 기준 추가 (별표 2)

II. 입안 예고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1) 개정 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 왕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시행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사전 협정관세 심사 규정 정비	관세청장이 세율차가 큰 물품 등에 대해 사전 협정관세 심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마련하는 한편, 사전 협정관세 심사 대상 물품에 대한 수입자 제출서류, 세관장의 심사 기준, 신고수리전 반출 및 원산지조사 전환 등 제반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캄보디아와의 협정 내용 반영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증명서의 선적 후 발급, 재발급 및 정정발급 절차를 해당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II. 입안 예고

6.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1) 개정 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5 조 제 20 항 후단에 따라 이스라엘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과 이를 확인하는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1967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한-이스라엘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양국 정부간 합의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 규정 신설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별표 1)과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임을 확인해야 하는 지역(별표 2)을 규정하고, 별표 1 또는 별표 2(이스라엘 점령 지역임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며, 이스라엘 점령 지역에서 생산한 재료나 수행한 가공 공정은 비당사국에서 생산하거나 수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협정관세 적용 신청 규정 신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 및 우편번호(이하 “생산지역”) 기재 사항이 적정한지 여부와 별표 1, 별표 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며,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또는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서에 “이스라엘 생산지역 확인 필요” 문구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II. 입안 예고

구분	내용
생산지역 심사 및 별표 2 지역 확인 규정 신설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지역이 미기재 또는 부적정하게 기재되었거나 별표 1에 해당 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반려하도록 하며,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며, 생산지역 심사를 완료한 후에 수입신고 수리하도록 함(수입신고 수리전 심사 원칙). 또한, 관세청장은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 여부를 외교부(15일내 결과 회신 원칙)를 통해 확인한 후 세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협정관세 적용 제한 규정 신설	세관장은 생산지역 심사 또는 원산지조사 결과 생산지역이 미기재 또는 부적정하게 기재되거나, 별표 1 및 별표 2(이스라엘 점령 지역임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생산지역 게시 규정 신설	관세청장은 관계 부처 또는 이스라엘 관세당국과의 협의에 따른 별표 1 및 별표 2의 변경사항을 관세청 FTA포털에 게시하고, 동 고시와 FTA포털에 게시된 내용이 다른 경우 게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자 함.

II. 입안 예고

7.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1) 개정 이유

보세공장 물류 프로세스를 개선을 통해 반입 원재료의 적기 공정투입과 생산물품의 원활한 외부 반출을 지원하여 보세공장 생산물류 촉진하고,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특례를 강화하여 보세제도를 활용한 수출비중이 높은 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첨단산업 적극 지원하는 등 보세공장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규제혁신으로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여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보세공장 물류처리 프로세스 개선	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가 가능한 물품과 도착전 사용신고 자동수리 대상물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외작업장 생산품에 대한 반입지역 규제 완화와 내국작업 종료물품에 대한 계속 장치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세공장 물류 처리가 원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 완화 등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 중 수출비중 요건을 삭제하고, 견본품의 기업부설연구소 반출입 절차의 개선과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자율관리보세공장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보세공장 관련 규제 완화	동일세관 관할구역 내 신규 공장 증설에도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가 가능하도록 하고, 납품된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해 하자보수 등을 위해 보세공장에 재반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해외로부터 임가공 의뢰된 원재료의 원상태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세공장 규제 내용을 개선하고자 함.
보세공장 특허 등 관련 규정 명확화	보세사 채용 및 보완 규정을 정비하고, 수입 통관 후 사용할 물품의 반입 후 수입신고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주의처분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제제 규정을 완화함과 동시에, 정기 재고조사 결과를 운영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II. 입안 예고

8.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1) 개정 이유

전자제출 대상 수입통관 첨부서류의 범위 및 간이세율적용 가능 한도금액을 확대하고, 합산과세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전자상거래 물품 신고항목을 신설하는 등 변화된 통관환경에 맞춰 규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관세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고시 내용 변경, 관세법령상 용어 변경사항 및 타 고시·훈령 개정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관련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전자제출 대상 서류 확대	수입신고 오류비율이 낮고 심사 실익이 적은 감면 건에 대해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하고자 함(정부용품 면세대상, 소액면세대상, 재수출면세대상, 항공협정에 따른 감면대상).
간이세율적용 가능 한도금액 확대	'00년 개정 이후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상승 분 등을 반영하여 간이세율적용 가능 한도금액을 과세가격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확대함으로서 여행자휴대품 등 신속통관을 지원하고자 함.
전자상거래물품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구매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입항일이 동일한 물품에 대해 합산과세하는 기준을 삭제하고자 함.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신고항목 신설	수입신고서 작성요령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유형, 해외판매자, 구매·배송대행업자, 판매 중개자 및 주문번호 신고항목을 신규로 추가하고자 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대상 자동차 수입신고요령 안내	수입신고서 작성 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대상 자동차 여러 대를 신고하는 경우, 물품별로 각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도록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자 함.

II. 입안 예고

구분	내용
자가사용 인정기준 명확화	[별표11]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특수통관 47200-458(2002.7.12.)호 업무처리지침 및 식약처 회신내역을 반영하여 요건 확인 면제를 위해서는 '국내의사' 처방전을 제출하도록 정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며, 그 외에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이하이면 자가사용으로 인정하도록 자가사용 기준을 정하고자 함.
그 밖의 규정 정비	통관보류 대상을 관세법 제237조와 일치시키는 등 관세법령 내용 및 실제 업무처리절차와 상이한 규정을 수정하고, 관세법령상 법률용어를 반영하는 등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자 함.

II. 입안 예고

9.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입안계획

(1) 개정 이유

지정검역물의 적용 범위 및 수입 조건을 명확하게 하여 현장에서 원활한 검역이 이루어지게 하고 원료 의약품, 시험연구용 의약품 및 임상·제조·시험연구용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수입검역을 개선하여 바이오제약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수모류, 수피류 및 가죽에 관한 규정 정비	동물에서 생산된 수모류 및 수피류의 적용범위를 현행화 하고, 동물별 수입 가능한 산처리 가죽에 대해 공통적인 수입조건이 적용되도록 하고자 함.
타조류 및 가금류 생산물에 관한 규정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타조를 타조류로 변경하여 타조류의 산처리된 가죽의 수입조건을 명확히 하고, 타조의 원피 등 육류 이외 생산물의 수입요건 중 질병 비발생 산정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② 가금의 비식용 생산물의 적용범위를 우모류로 명확하게 하여 검역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알가공품 품목의 용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난백분의 수입요건(처리 시간)을 변경하고자 함.
그 밖에 수입검역 관련 변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반려동물의 사료 검역 및 동물비료의 지정검역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② 연구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방역상 안전하게 가공된 품목에 대한 통일된 검역 조건 적용 등 관련 수입요건을 개선하고자 함. ③ 동물보호법 기준으로 용어를 통일 등 전반적인 수입검역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기한

‘22.11.21

III. 조세심판사례

1.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국산임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6.10.24.부터 2016.12.19.까지 DDD 소재 000(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 외 000건으로 000(KKK,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8.11.부터 한-미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쟁점물품 및 동일물품(수입신고 000건, 이하 “쟁점 외 물품”이라 하고, 쟁점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 등 000건에 대한 원산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그 원재료 구매를 위한 Purchase Order에 원산지가 BBB산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1.3.24. 쟁점수출자에게 나머지 쟁점물품 등(수입신고 000건)에 대한 원산지 관련 자료를 2021.5.18.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쟁점수출자는 위 회신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6.1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등에 대한 특혜관세 배제 예비결정을 통지한 후,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21.9.13. 한-미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관세 000원, 부가가치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1.10.29.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면제 신청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18. 가산세 면제 신청을 불승인(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21.12.28.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이하 “쟁점③처분”이라 하고, 쟁점① · ②처분과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III. 조세심판원 사례

(2) 결정요지 : 심판청구 기각

쟁점수출자는 세계 각국에서 원재료 수입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고 있어 쟁점 원재료 원산지가 미국산이 아닐 수 있음에도 쟁점수출자는 쟁점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3) 결정일

2022.10.14. (조심 2022 관 0006)

III. 조세심판원 사례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한중 FTA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1) 주요내용

가. 청구인은 2019.1.7. 000 소재000(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로 000(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 및 000(이하 “쟁점물품②”라 하며, 쟁점물품①과 함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이하 “쟁점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갖춘 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4%)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심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한-중 FTA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쟁점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1.10.25. 청구인에게 원산지 자율점검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2021.12.10. 처분청에 적법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2.20.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2.3.17. 처분청에 가산세 부과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3.28. 이를 거부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 특례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관세 000원, 부가가치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 심판청구 기각

한중 FTA 와 FTA 특례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는 수입자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적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신고수리행위와 물품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결정일

2022.11.18. (조심 2022 관 0114)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1. Mung bean, frozen 등 2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Mung bean, frozen; PR.CHNA
	Mung bean, cooked, frozen ; 냉동 찐녹두;; VIETNAM
물품 설명	꼬투리와 껍질을 제거한 녹두(Vigna 속)를 물에 담근 후 일부 열처리하여 냉동한 것(식용)
HS CO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전 : 제 0710.22-0000 호 (기본세율 27%), - 변경 후 : 제 0713.31-9000 호 (기본세율 30%)
변경 사유	신선 녹두를 냉동한 것이 아닌 건조 상태의 녹두를 물에 담근 후 냉동한 것이므로 제 0713.31-9000 호에 분류 (제 2022년 제 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2.10.06.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2. 세포벽추출물(GCW) 등 2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Feed preparation ; GCW(Great Cell Walls)
	② Feed preparation ; Agrimos
물품 설명	효모를 자가분해 후 세포벽 성분만을 분리하여 만든 미황색계 분말의 세포벽 추출물로, 사료에 첨가하여 사용 (β -글루칸 25%, 만난 24%, 단백질 30% 등 함유)
HS CODE	- 변경 전 : 제 2309.90-9090 호 (기본세율 5%) - 변경 후 : 제 2309.90-2099 호 (기본세율 5%)
변경 사유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보조사료의 일종이므로 제 2309.90-2099 호에 분류 (2022년 제 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2.10.06.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3. HV 단자 등 2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p>① Other parts of ignition coils; HV단자; IC312001</p> <p>② 단자; STUD</p>
물품 설명	차량용 스파크 플러그 끝단에 위치하여 점화코일에서 발생한 전압을 전극으로 전달하는 기능의 1000V 이하의 전기 단자
HS CO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전 : 제 8511.90-9000 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 제 8536.90-9090 호 (WTO 협정세율 0%)
변경 사유	플러그와 점화코일을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자(terminal)이므로 관세율표 제 16 부 주 제 2 호 가록에 따라 제 8536.90-9090 호에 분류 (2022년 제 7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2.10.06.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4. Wood sawn 등 2건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Wood sawn; Rubber wood finger joint board
	② Wood sawn; 태권도 수련용 보드
물품 설명	원목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후 측면을 접합한 가구 제조 용(핑거 조인트된 것) 또는 태권도 수련용의 목제품
HS CODE	- 변경 전 : ①제 4407.29-9000 호(기본세율 5%) ②제 4407.99-9000 호(기본세율 5%) - 변경 후 : 제 4421.99-9000 호 (기본세율 8%)
변경 사유	일정 길이로 절단한 재재목의 측면을 접합한 목제품으로 건축용 이외의 것이므로 제 4421.99-9000 호에 분류 (2022년 제 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2.10.06.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5. GMR Based Crank Shaft sensor 등 4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GMR Based Crank Shaft sensor; TLE5027C, 9422000104
	② TLE5028CBGMRICBOX, 9422000418
	③ SENSOR IC, A1688LUBN-T
	④ Differential Two-Wire Hall Effect Sensor IC ; TLE4941C
물품 설명	모노리식 집적회로(IC)와 적층세라믹 콘덴서(Multi Layer Ceramic Capacitor)가 별도 패키징된 형태의 자기저항(Magnetic resistance) 센서
HS CODE	- 변경 전 : ①~③제 8543.70-9090 호(기본세율 8%) ④제 8543.90-9090 호(기본세율 8%) - 변경 후 : 제 9031.80-9099 호 (WTO 협정관세 0%)
변경 사유	집적회로(IC)와 콘덴서가 별도 패키징된 형태로, 회전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제 90 류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제 9031.80-9099 호에 분류 (2022년 제 7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2.10.06.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발표

관세청은 10월 5일(수, 10:00~12:00) 서울세관에서 윤태식 관세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요	
▪ [시간/장소]	10.5(수) 10:00~12:00 /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 [참석자]	관세청장, 중소기업중앙회장, 경제단체 등 각계 민간전문가 (총 23명*) * (민간전문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서창갑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 학회장 등 14명 (관세청) 윤태식 관세청장, 관세청 차장, 실·국장 등 9명
▪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관련 논의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대책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3만 8천건('22. 상반기)의 해외직구 민원 및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22.8.31)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국민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등 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20대 과제 요약	
I. 국민편의 제고	<p>①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소액면세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 면세통관이 아님에도 구매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 과세되는 문제 개선(동일 입항일 기준 삭제)</p> <p>②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를 통해 구매자에게 직구물품의 품명·신고일자·개인통관 고유번호·납부세액 등 통관이 완료된 내역 안내</p> <p>③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 제공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세금 조회, 납부(가상계좌 제공), 반품시 세금 환급신청까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세금납부·환급신청 시스템' 구축</p>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20대 과제 요약	
I. 국민편의 제고	<p>④ 해외직구물품 재판매 기준 명확화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나,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p>
II. 소비자 보호	<p>⑤ 명의도용 피해 방지 1) 플랫폼에서 해외직구시, 플랫폼의 '고객 가입정보'와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정보' 일치 여부 검증 2)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에 '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 추가 3)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 추진</p> <p>⑥ 해외직구 민원 대응체계 강화 1) 콜센터 전문 상담인력 증원, 상담서비스 만족도 조사 확대,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신규 도입 2) 플랫폼에서 구매자에게 수입금지물품 등 통관 관련 정보를 사전 제공하도록 협조</p> <p>⑦ 유해 식·의약품 반입 차단 1) 식·의약품 품명 등 관세청-식약처 간 공유정보 구체화 및 협업검사 강화 2) 해외직구 제한 식·의약품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불법거래 감시팀 상시 운영</p> <p>⑧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단속 강화 1)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 신설 및 직구 집중 시 기별 특별단속기간 운영 2) 중점 단속대상을 마약 등 밀수, 통관부호 도용, 구매대행 세금편취 까지 확대</p> <p>⑨ 거래정보를 활용한 안전한 통관체계 마련 1) 거래정보가 관세청으로 제공되지 않은 고위험 해외직구 물품에 검사역량 집중 2) 거래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우수업체 물품은 검사 최소화, 신속통관</p>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20 대 과제 요약	
III.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p>⑩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규제혁신</p> <p>1)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한 세관을 3개(인천·평택·김포)에서 전국 34개로 확대</p> <p>2) 주문취소 등으로 인한 통관목록 정정 절차 간소(서류제출 전산화, 부분정정 허용)</p>
	<p>⑪ 주요 인접국가 해상특송체계 확대</p> <p>항공 대비 30% 정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해 일본*·베트남 등 관세당국과 협의 추진</p> <p>* 대(對)일본 수출 해상 특송화물에도 목록통관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일본 관세당국과 협의</p>
	<p>⑫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p> <p>1)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업의 동의를 받아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직접 업체 수출입실적자료 제공</p> <p>2) 은행의 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환송금 적발, 기업의 보조금 신청 등 목적으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p>
	<p>⑬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비용 및 입점 지원</p> <p>1) 지자체(부산시)와 협업하여 해상특송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p> <p>2)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컨설팅사업을 경인권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p>
	<p>⑭ 전자상거래 수출입 빅데이터 개방</p> <p>1) 수출 유망품목·국가 선정 등에 유용한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제공</p> <p>2) 전자상거래 데이터를 연구기관 등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 추진</p>
	<p>⑮ 韓-中 복합운송 활성화</p> <p>자국에서 차량에 물품을 적재한 채 별도 하역·적재 없이 동일 차량으로 상대국 공항까지 운송하여 바로 환적하는 육·해·공 복합운송 추진</p>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20대 과제 요약

IV. 제도·인프라 정비

⑯ 전자상거래 맞춤형 법령 정비

전자상거래물품 정의, 통관절차, 거래정보 제공·활용 등 해외직구 특성에 맞는 전자상거래 통관 규정 마련

⑰ 해외직구 전용 신고제도 마련

- 1) 전자상거래 유형, 주문번호 등 정보를 기재하도록 목록통관 신고항목 개선
- 2)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제도' 신설

⑱ 권역별 전자상거래 거점 육성

- 1) 경인권역: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신축 완료 ('23.9)
- 2) 서해안권역: 평택항 특송통관장 확장·군산항 특송통관장 설치 적극 검토
- 3) 경남권역: 부산세관 권역을 대(對)일본 해상특송 거점으로 육성

⑲ 첨단 검사장비 도입 및 기술 개발

- 1) 라만분광기 등 최첨단 마약 탐지장비 도입
- 2)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고해상 복합 엑스레이 등 첨단기술·장비 개발
- 3) 인공지능 엑스레이(AI X-ray) 성능 강화 및 현장 본격 배치

⑳ 동북아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구축

- 1)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센터(GDC) 재고물품을 정식수입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2) 주문 취소된 해외직구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센터(GDC)에 반입한 후 해외 재판매 하도록 허용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2. 美 상무부,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조치 발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0.7 일(美 현지 시각)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對중국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관보에 게재하였으며 통제대상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제대상

구분	조치 내용
반도체 (10.21일부터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정사양(연산능력 300TFLOPS, 데이터 입출력속도 600GB/S 이상)의 첨단 컴퓨팅 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국에서 생산된 고사양 GPU 등도 허가 없이 중국 수출 불가함. ② 특정사양(연산능력 100PFLOPS 이상)의 수퍼 컴퓨터에 최종 사용되는 모든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도 수퍼컴퓨터 개발·생산 목적이면 허가 필요함. ③ 美 우려거래자(Entity List)에 등재된 중국의 28개 반도체·수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국에서 특정 사양의 기술·SW·장비로 만든 제품도 허가 필요함. <p>※ 상기 3개 품목은 거부추정 원칙이 적용되어, 허가 가능성 낮음.</p>
반도체 장비 (10.7일부터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반도체 생산목적인 경우, 장비를 포함하여 모든 미국 수출통제 품목은 허가 없이 중국 수출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직칩 : FinFET 구조 또는 16/14nm 이하 - DRAM : 18nm 이하 - 낸드 : 128단 이상 ② 새로이 통제대상에 편입된 고사양 '증착장비'도 수출제한됨. ③ 중국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거부(presumption of denial)되는 한편, 우리 기업과 같이 중국 내 다국적 기업에는 사안별 심사(case-by-case review)를 통해 허가를 발급함.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2. 산업계 영향

금번 조치가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분	산업계 영향 분석 내용
반도체	<p>① 첨단 컴퓨팅 칩 해당 기술기준의 칩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함. ※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AI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 제한 가능성 존재함.</p> <p>② 특정사양의 수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 FDPR0I 적용되는 통제품목이 광범위하나,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수퍼컴퓨터가 극소수에 불과하여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됨.</p> <p>③ 28개 우려거래자 대상 수출 FDPR 적용으로 통제품목이 광범위하나, 28개 기업으로 통제대상이 제한됨(수출현황 추가분석 필요).</p>
반도체 장비	<p>중국에서 가동중인 SK 우시공장, 삼성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대상'으로 분류되어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됨. 다만, 미국 수출통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p>

3. 협의 결과

금번 수출통제는 美 행정부의 조치로 미측으로부터 사전 정보공유가 있었으며, 이에 우리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요 협의 결과	
별도 허가절차 도입	중국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측은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절차를 도입함. 이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하였음.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주요 협의 결과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 위한 협의	중국 내 한국 공장 업그레이드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하고 투 명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함.
수출통제 워킹그룹 활성	금번 조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검토하 기 위해 산업부와 美 상무부간 한-미 공급망·산 업대화(SCCD) 산하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 협 의체널로 활용키로 함.

4. 후속조치

정부는 금번 미측 수출통제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대중국 수출기업 대상 수출통제 설명회 개최, 수출통제 가이드라인 배포,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 등(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 미국 수출통제 조치 관련 정보를 게재할 것임)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60일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 등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업계의 의견을 추가 개진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개최하여 기업 애로사항 등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확인된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3. 냉매 등에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 감축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수소불화탄소(이하 HFC)의 감축 이행을 위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11 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24년부터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지구온난화물질인 HFC 류에 대한 국내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 감축규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몬트리올의정서 개정안, 「키갈리 개정서」란?

- **개요 :**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기준 오존층파괴물질 외에 강력한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까지 감축하기 위한 '키갈리개정서' 채택('16.10월)
 - * 개정서 비준 국가('22.10월 현재) : 198개국 중 美, EU, 日, 중남미·아프리카지역 등 137개국
- **일정 :** 우리나라 '24년부터 '45년까지 기준 수량의 80% 감축* 필요
 - * 감축일정 : ('24)동결 → ('29)10%감축 → ('35)30%감축 → ('40)50%감축 → ('45)80%감축

1. 개정 배경

그간 '89년 발효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의 대체물질로 HFC 가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HFC 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큰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개정 내용

금번 법률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협의 결과	
특정물질 정의 추가	특정물질의 정의에 HFC를 추가하여 기존 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수소불화탄소(HFCs)를 제2종으로 구분하였다.
'최대한 파괴 의무' 규정 마련	특정물질 제조사 부산물로 배출되는 HFC-23에 대한 '최대한 파괴 의무' 근거를 마련하였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주요 협의 결과	
부담금 산정 규정 보완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해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법률 개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낮추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 하는 등 그간 법률 개정 수요를 반영하였다.

3. 지원 방안

정부는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HFO 등 대체 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대체발포 사용기술 부재 문제해결을 위해 500 여개 폴리우레탄(PU)제조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 개발을 '23년부터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냉매·소화·발포 등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하여 대체 전환 기술, 수급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민간 주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체 전환이 어려운 중소업체를 위한 현장 기술 컨설팅과 저금리(공자기금 대출금리-2%)의 대체설비 전환 융자도 지속 제공한다.

4. 향후 일정

이번 법률 개정은 공포 후 6 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며, '24년부터 제 2 종 특정물질(HFCs)에 대한 신규 감축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국내 HFC 생산·소비량(최근 3년간) 산정, 분야별 협의회를 통한 업계 수요 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본격 진행하여, 내년 하반기까지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관련 업계에 적극적인 안내·홍보와 함께, 규제 완화, 신규 지원사업 발굴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4. 관세청,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2,567 억원 적발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올해 들어 9 월까지 총 2,567 억원 상당의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을 적발했다고 10월 11일(화) 밝혔다.

그간 관세청은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판매시장을 잠식하는 외국산 저가물품의 국산 둔갑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 역량을 집중해왔다.

올해 9 월까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적발 실적은 총 59 건, 2,567 억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건수는 29% 감소했으나, 금액은 35% 증가하여, 범죄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수입물품의 포장박스에 제조자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 오인(誤認)을 유도한 불법행위 적발이 급증하여 총 적발액의 47%인 1,218 억원에 달하였으며, 주요 품목은 계측·광학기기(1,158 억원), 기계류(608 억원), 자동차부품(87 억원), 가전제품(67 억원) 등이다.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한 규모도 809 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1. 개정 배경

관세청이 적발한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위반 사례	
원산지 허위 표시	A社는 중국산 마스크 60만장(3억원 상당)을 수입하여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을 제거하고, “제조국 : 대한민국(MADE IN KOREA)”이 허위 표시된 자체 제작 포장지로 재포장한 뒤 국산 물품으로 판매('22. 1월 적발)
	B社는 중국, 베트남으로부터 칫솔, 치실 등 140만 점(3억원)을 수입한 뒤, “MADE IN CHINA” 등 원산지표시가 표시된 물품박스 또는 비닐포장지를 제거한 후, 원산지가 “한국”으로 허위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하여 국산 물품으로 판매('22. 1월 적발)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주요 위반 사례	
원산지 손상변경	C社는 중국에서 개당 8~10만원 상당의 농업용 분무기, 전동가위 등 41,000점(71억원)를 수입한 뒤, 부착되어 있던 “MADE IN CHINA” 스티커를 제거하고 원 가격의 2배 이상인 25~40만원 상당의 국산 물품인 것처럼 판매('22. 4월 적발)
원산지 오인표시	D社 등은 중국산 전력량계 170만점(572억원 상당)을 부분품 형태로 국내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조립하면서, 중국산 원산지 표시는 물품 뒷면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표시하고 포장 및 물품 앞면에 제조자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여 국산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유통('22. 6월 적발)

한편, 관세청과 조달청은 국산물품 우선 공공조달 과정에서 외국산의 국산 둔갑 납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7. 9 월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우범정보 공유, 합동단속 실시 등 공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1~9 월간 1,217 억원 상당의 공공조달 국산둔갑 부정납품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는 올해 전체 적발액 2,567 억원의 47%에 달하는 금액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행위는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야기하는 한편,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 범죄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조달청과의 합동단속 뿐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조달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주요 공기업 등과도 부정납품 관련 우범정보 공유 등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수입 물품의 국산 둔갑 불법 조달행위 근절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도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5. 전원·데이터 접속(USB-C) 기준, 국가표준으로 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전자제품의 커넥터형상, 전원공급 및 데이터전송을 USB-C 타입으로 통합·호환하여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KS)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표준안은 예고고시(‘22.8.10.~10.9.)에 이어, 지난 기술심의회(‘22.10.18.)를 통과하였고 표준회의(‘22.11 월 초)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 월 중에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휴대전화, 태블릿 PC, 휴대용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에서 전원공급과 데이터전송은 다양한 접속단자와 통신방식이 존재하여 환경 및 비용 문제와 소비자 사용 불편을 초래해왔다.

한편 유럽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전자폐기물을 감소, 국민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USB-C 타입 충전기 표준화 법안*을 EU 의회 및 이사회에 제출했고 최근 EU 의회에서 가결되어 EU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 EU 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디지털카메라 등 총 12 종 기기에 대하여 2024년 말까지 USB-C 충전단자가 탑재될 예정

지난해 국표원은 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USB-C 국가표준 제정 필요성과 표준 적용에 따른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USB-C 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USB-C 표준기술연구회는 USB-C 관련 IEC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가표준안을 개발하고, USB-C 의 국내 적용 가이드라인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국표원은 USB-C 타입의 기술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표준 13 종(참고 2) 중 3종(참고 3)을 2022년에 국가표준으로 제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10종도 이후 순차적으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표원에서는 국내 제조사, 수출기업, 수입자 및 소비자 대상으로 KS 국가표준 3 종 소개, ‘USB-C 표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버전 1.0)’ 발간 및 홍보자료 소개를 위한 “전원 데이터 접속(USB-C) 표준 기업설명회”를 11 월 말에 개최할 계획이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6. 자유무역협정 활용한 베트남과의 무역이 쉽고 빨라진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0월 31일(월)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재무부 관세총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EODES*)의 구축·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동 시스템이 양국 간에 구축·운영되는 경우 양국 수출입자가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신청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짐

※ 현재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 운영 현황 : 중국('16년 12월~), 인도네시아('20년 3월~)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한-아세안('07년), 한-베트남('15년) 자유무역협정 등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나라로서 '21년 기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이자 6대 수입국이다.

양 관세당국은 '17년 6월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EODES) 도입에 합의한 이후, 행정·기술 사항 등을 꾸준히 논의하여 이번에 양해각서 체결에 이르렀다.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EODES)을 통해 양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게 되면, 수출입자가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수입국 세관에 제출할 필요가 사라진다.

이로써, 수출입자의 특혜관세 신청 절차가 간편·신속해지고, 통관 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7. 식약처,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추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치류 등 실험동물을 이용하지 않고 화장품의 광독성*과 피부감작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건을 발간했다.

* 피부에 적용된 광반응성 물질이 자연광에 노출되면서 급성독성반응이 일어나는 것

** 피부로 들어온 항원에 의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시험법'과 '화학적(*In chemico*) 피부감작성시험'에 대한 것이다.

구분	내용
인체피부모델 광독성시험법	인체의 피부와 생화학적·형태학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공 3D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하여 시험물질의 광독성 유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험.
화학적 피부감작성시험	단백질 성분 중 하나인 시스테인(cysteine)을 함유한 인공 펩타이드를 가지고 화학 반응에 따른 발색 정도를 확인하여 시험물질의 피부감작성을 확인하는 시험.

식약처는 2007년부터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피부자극시험, 안자극시험, 피부감작성시험, 광독성시험' 등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8건을 발간하였다.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에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3R 원칙*)를 고려하여 마련됐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으로 대체(Replacement), 사용 동물 수축소(Reduction), 동물실험 진행 시 고통 완화(Refinement)